

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

환경노동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12월 17일, 정부 제출

나. 회 부 일 자: 2024년 12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7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(2025.7.18.) 상정, 제안설명, 대체토론, 소위원회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9.17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9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환경노동위원회(2025.9.19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(정부)

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(수석전문위원 신항진)

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(안 제19조제12항 신설).

#### [ 개정안 조문대비표 ]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<br>① ~ ⑪ 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<br>① ~ ⑪ (현행과 같음)<br><u>⑫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 |

현행법 제19조<sup>1)</sup>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·포장재로 인하여

- 1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 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(이하 “재활용부과금”이라 한다)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.
-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, 그 납부시기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
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 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4. 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  5. 경매가 개시된 경우
  6. 법인이 해산한 경우
  7.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~ ⑩ (생 략)
-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

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함.

### [ 재활용부과금 개요 ]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요내용 | 생산자가 제조·수입한 포장재·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생산자가 회수·재활용하도록 책임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품목 | -자원재활용법상 28종(포장재 4종*, 제품 24종**),<br>-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상 5개군 50종(온도교환기기, 디스플레이기기, 태양광 패널 등)<br>*(포장재) 합성수지 포장재(PET병, 단일재질, 복합재질 등), 금속캔, 유리병, 종이팩<br>**(제품) 양식용부자, 김발장, 곤포사일리지필름, 전지, 타이어, 윤활유, 조명, 필름류, 합성수지 재질 제품 15종 |
| 부과대상 | 재활용의무생산자,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출방식 | (재활용의무 미이행량 × 재활용단위비용) +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금액(15~3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환경부

그런데 환경부예규인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<sup>2)</sup>에 따르면, 고지할 재활용부과금액이 10,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최저부과액을 두고 있는데,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<sup>3)</sup>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, 감면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모법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.<sup>4)</sup>

2)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(이하 "재활용의무생산자"라 한다)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6조(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) ①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10,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.

②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

3)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(부담금 부과 원칙) ⑤ 부담금의 부과, 감면,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, 현금,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이에 개정안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.

참고로, 동 법 제12조의2<sup>5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시행령 제14조의4<sup>6)</sup>에서는 최저부과액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
##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##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생 략

---

4) 「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」, 87p, 법제처, 2024.

5) 「**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**」 제12조의2(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
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) 「**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제14조의4(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)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1만원을 말한다.

## 6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## 7. 소수의견의 요지

없 음

## 8. 기타사항

없 음